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미 시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5. 10.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도봉국민체육센터」 다목적체육관을 체력단련실로 용도 변경함에 따라 사용료 규정 및 용어 등을 정비하여 관내 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봉국민체육센터 사용료 규정 정비(안 별표 2)

1) 대인 사용료에 관한 사항

- 다목적체육관(배구장) 삭제 및 체력단련실 신설

2) 전용·부대시설 사용료 삭제

나.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3조~제5조, 제7조~제11조, 제13조, 제15조, 제17조)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감사담당관, 정책기획과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붙임)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이하“시장”이라 한다.)”를 “(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체력향상”을 “체력 향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프로그램개발”을 “프로그램 개발”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시”라고”를 ““시”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을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체육관련”을 “체육 관련”으로, “구미시 설공단”을 “구미도시공사”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시민정서”를 “시민 정서”로, “개발보급”을 “개발 보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경우는 예외로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수탁받은”을 “수탁 받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감사결과”를 “감사 결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 때”를 “한때”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임의변경 하였”을 “임의변경하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운영협약”을 “운영 협약”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허가시간 등 준수사항”을 “허가 시간 등 준수 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저해하는”을 “방해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제한기간”을 “제한 기간”으로, “누적기간”을 “누적 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용제한”을 “사용 제한”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시설보수”를 “시설 보수”로, “시설사용”을 “시설 사용”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체육센터 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구미시 체육센터 관리 운영 조례 [별표 2]

구미시 체육센터 사용료(제14조 관련)

1. 들성생활체육센터

• 대인 사용료

(단위:원)

구 분	기 준	대 상	구미시 관내	구미시 관외
수영	3시간	성인	3,500	5,000
		청소년, 군인	3,000	4,500
		어린이, 노인	2,500	4,000
	단체(3시간)	성인	3,000	4,000
		청소년, 군인	2,500	4,000
		어린이, 노인	2,000	3,500
	자유(월)	성인	60,000	70,000
		청소년, 군인	50,000	60,000
		어린이, 노인	42,000	52,000
아쿠아로빅	자유(월)	성인	60,000	70,000
		청소년, 군인	50,000	60,000
		어린이, 노인	42,000	52,000
체력단련실	1회	성인	3,000	4,000
		청소년, 군인	2,500	3,500
		어린이, 노인	2,000	2,500
	자유(월)	성인	42,000	50,000
		청소년, 군인	36,000	45,000
		어린이, 노인	24,000	40,000

요가 필라테스	강습(월)	성인	36,000	42,000
		청소년, 군인	30,000	35,000
		어린이, 노인	26,000	30,000
배드민턴	2시간	성인	3,000	4,000
		청소년, 군인	2,500	3,500
		어린이, 노인	2,000	3,000
	자유(월)	성인	36,000	42,000
		청소년, 군인	30,000	35,000
		어린이, 노인	26,000	30,000
농구	2시간	성인	2,500	3,500
		청소년, 군인	2,100	3,100
		어린이, 노인	1,800	2,800
배구	2시간	성인	2,500	3,500
		청소년, 군인	2,100	3,100
		어린이, 노인	1,800	2,800

※ “월회원”이란 1개월 회원권을 소지한 회원을 말한다.

※ 위 종목 외 체육센터에서 주관하는 체육 프로그램의 사용료는 상기 유사 종목의 요금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한다.

• 다목적체육관 전용료

(단위:원)

구 분	사용 목적	평 일	비 고
다목적	체육 행사	1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 일, 공휴일은 평일 사용료의 20% 가산한다. 야간사용은 주간 사용료의 20% 가산한다.
체육관	체육 행사 외	150,000	

※ 주간사용은 09:00 ~ 18:00 운영 시간 중 “4시간 이내” 사용

※ 야간사용은 18:00 이후

※ 주간사용 4시간 초과 사용 시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5% 가산한다.

(1시간 미만 초과분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원)

시 설 명	단 위	사용료(원)	비 고
무대조명	4시간 사용	4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4시간 초과 사용 시 시간당 기본사용료의 25%를 가산한다. (1시간 미만 초과분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냉·난방기		40,000	

2. 강동국민체육센터

- 대인 사용료

(단위:원)

구 분	기 준	대 상	구미시 관내	구미시 관외
수 영	3시간	성인	3,500	5,000
		청소년, 군인	3,000	4,500
		어린이, 노인	2,500	4,000
	단체(3시간)	성인	3,000	4,000
		청소년, 군인	2,500	4,000
		어린이, 노인	2,000	3,500
	자유(월)	성인	60,000	70,000
		청소년, 군인	50,000	60,000
		어린이, 노인	42,000	52,000
아쿠아로빅	자유(월)	성인	60,000	70,000
		청소년, 군인	50,000	60,000
		어린이, 노인	42,000	52,000
체력단련실	1회	성인	3,000	4,000
		청소년, 군인	2,500	3,500
		어린이, 노인	2,000	2,500
	자유(월)	성인	42,000	50,000
		청소년, 군인	36,000	45,000
		어린이, 노인	24,000	40,000
요 가 필 라 테 스	강습(월)	성인	36,000	42,000
		청소년, 군인	30,000	35,000
		어린이, 노인	26,000	30,000

※ “월회원”이란 1개월 회원권을 소지한 회원을 말한다.

※ 위 종목 외 체육센터에서 주관하는 체육 프로그램의 사용료는 상기 유사 종목의 요금을 감안하여 별도 산정한다.

3. 도봉국민체육센터

- 대인 사용료

(단위:원)

구 분	회 원	대 상	구미시 관내	구미시 관외
스쿼시장	1시간	성인	5,000	7,000
		청소년, 군인	4,000	6,000
		어린이, 노인	3,500	5,500
	월(자유)	성인	60,000	70,000
		청소년, 군인	50,000	60,000
		어린이, 노인	45,000	55,000
	월(강습)	성인	70,000	80,000
		청소년, 군인	60,000	70,000
		어린이, 노인	55,000	65,000
체력단련실	1회	성인	3,000	4,000
		청소년, 군인	2,500	3,500
		어린이, 노인	2,000	2,500
	자유(월)	성인	42,000	50,000
		청소년, 군인	36,000	45,000
		어린이, 노인	24,000	40,000

※ “월회원”이란 1개월 회원권을 소지한 회원을 말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명칭 및 위치) 구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구미시 체육센터(이하“체육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p> <p>제4조(사업) 체육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활체육 보급 및 시민 <u>체력향상</u> 2. (생 략) 3. 건전한 여가선용 및 <u>프로그램개발</u> 보급 <p>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은 구미시(이하“시”라고 한다)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시장은 전문적 관리와 운영·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u>체육관련</u> 비영리 단체나 <u>구미시설공단</u>(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에 위</p>	<p>제3조(명칭 및 위치) -----(이하 “시장”이라 한다)-----</p> <p>-----</p> <p>-----</p> <p>-----.</p> <p>제4조(사업) ----- 각 호</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u>체력향상</u> 2. (현행과 같음) 3. ----- <u>프로그램개발</u> ----- <p>제5조(관리 및 운영) ① -----</p> <p>-----</p> <p>“시”라 -----</p> <p>----- .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p> <p>-----</p> <p>-----</p> <p>-----</p> <p>----- <u>체육 관련</u></p> <p>----- <u>구미도시공사</u>-----</p> <p>-----</p>

탁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7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지역사회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다양한 시민정서 함양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생활체육의 장, 문화체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수탁관리자는 위탁받은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체육센터안의 세부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재산의 관리) ① 수탁관리자는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재산을 체육센터 운영 이외의 목적에 사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

----- 시민 정서
----- 개발 보급-----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8조(재산의 관리) ① -----

----- 수탁 받은-----

용할 수 없다.

② (생략)

제10조(감독)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감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운영의 해제)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해제할 수 있다.

1. 체육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 하였을 때

2. (생략)

3. 위탁관리 운영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생략)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생략)

2.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 감사 결과-----
-----.

제11조(위탁운영의 해제) -----

----- 각 호-----
----- 한 때-----
-----.

1. -----
----- 임의변경-----

2. (현행과 같음)

3. ----- 운영 협약-----

4. (현행과 같음)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및 제한 등) ① ----- 각 호-----

-----.

1. (현행과 같음)

2. -----

용하거나 허가조건 및 허가시
간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3.·4. (생략)

5. 그 밖에 체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 1회 위반 시 7일, 2
회는 15일, 3회 이상은 30일간
사용자격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기간은 위반일로
부터 가산하고 누적기간은 6개
월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
다.

1. (생략)

2. 음주, 흡연, 질서 문란 등으로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람

3. ~ 5. (생략)

④ (생략)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 납부된
사용료는 미사용한 이유로 반환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

----- 허가
시간 등 준수 사항-----

--

3.·4. (현행과 같음)

5. -----
---- 방해하는 ----

② --- 각 호-----

----- 제한 기간-----

----- 누적 기간-----
-----.

③ ----- 각 호-----

1. (현행과 같음)

2. -----
사용 제한-----

3. ~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사용료의 반환) ① -----

-----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체육센터 시설보수 등으로
인한 자체 사정에 따라 시설사
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이 취소
된 때

2.·3. (생략)

② (생략)

제17조(예산 및 결산) ① 체육센
터를 운영하는 자(이하 “관리
자”라 한다)는 매 회계연도 개
시 전에 체육센터의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
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생략)

-----.

1. ----- 시설 보수 -----
----- 시설 사
용-----

2.·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예산 및 결산) ① -----

----- 다음 연도

-----.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소 관 부 서		체육진흥과
입 안 자	과 장	박 미 선
	팀 장	곽 동 근
	담 당 자	박 지 영 (480-4915)